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정보교환 대응의 한일비교

타무라, 요시히로  
큐슈대학 대학원

<https://doi.org/10.15017/2198468>

---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6, pp.89-98, 2006-03-15.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정보교환 대응의 한일비교

타무라 요시히로 (규슈대학 대학원)

## I. 머리말

한일양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식품의 증가, 소해면상뇌증 (BSE: 이하, 광우병으로 함) 이나 조류독감 등 인축공통전염병 발생에 따라 식품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심리적 불안 증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저감시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위험분석 수법(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이 행정체계에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식품안전정책 중에서 위험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양국에서 어떤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가와 더불어 그 활동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위험정보교환의 개념을 밝히고, 한일양국의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험정보교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한일양국의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안전행정의 특징과 소비자에 대한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정보교환 도입의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일본의 대처로써 식품안전위원회 발족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논한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카이(甲斐)<sup>(1)</sup>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정부에 비하여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총괄하면서 앞으로 한일 식품안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 II. 위험정보교환의 개념과 선행연구

### 1. 위험정보교환의 개념

식품에 대한 위험정보교환은 비교적 최근 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보교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며,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정의도 확립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킷가와(吉川)<sup>(2)</sup>에 의하면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정의는 National Research Council<sup>(3)</sup>의 정의에 의해 확립됐

(1) 甲斐論, 2001 〈農産物, 食品の本来的「價値」と安全性確保の展望〉《食品の安全性と品質表示》(日本農業市場學會編, 2001 《食品の安全性と品質表示》)(筑波書房, 東京)

(2) 吉川肇子, 2004 〈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考え方と課題〉《食品安全システムの實踐理論》(新山陽子編, 2004 《食品安全システムの實踐理論》)(昭和堂, 京都)

(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Improve Risk Communication(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1

다고 한다. 여기서 위험정보교환을 “개인·집단·기관간의 정보 및 의견의 상호 교환과정이다.” 라고 정의하며, 그 과정에는 위험의 본질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FAO/WHO<sup>(4)</sup>에는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소비자와 그 외 기타 이해관계자간의 위험이나 그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sup>(5)</sup>는 “위험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환”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 정의에 공통적인 것은 키타와(吉川)의 논문에 지적되어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보교환과정으로써 파악하는 점이다<sup>(6)</sup>. 이러한 점에서 위험정보교환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각 관계자간에서 공유 및 교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정보교환에 있어서는 정보의 일방적인 제공만이 아닌 서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도모하여 갈 것인가가 위험정보교환 추진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2.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한일양국의 선행연구

본 문에서는 현재까지 한일양국에서 이루어진 식품안전성에 관한 위험정보교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양국이 위험정보교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쪽 연구로는 이병오<sup>(7)</sup>, 최지현 외<sup>(8)</sup>, 엄영숙<sup>(9)</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병오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근년 발생한 안전성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그 중에서 식품안전성에 관한 개념(안전과 안심, 위험)을 정리, 한국의 식품안전행정 재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정보교환의 필요성, 생산이력제 도입 등, 식품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정책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식품안전행정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지현 외는 위험분석에 대한 개념이 정부당국이나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후, 농산식품·축산식품·수산식품·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정보교환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통적인 것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의 미흡, 정책홍보 부족,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미흡, 소비자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유인부족 등을 들고 있다.

엄영숙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생해 왔던 식품안전사고를 사례로 그러한 사고들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개념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의 언론 보도문제, 소비자와 전문가의 인지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 단계에의 정보공유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쪽 연구로는 키타와(吉川)<sup>(10)</sup>, 나카지마(中島)<sup>(11)</sup>, 나카시마(中嶋)<sup>(12)</sup>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키타와(吉川)는 위험정보교환의 개념을 밝히면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경우 위험정보교환의 필요성 및 전략을 논술하고 있다. 그 중 위험정보교환은 “여러 가지 관계자의 성실한 노력이 축적됨을 시작으로 비로소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 가지 시스템으로서의 위험정보교환이 유효적으로 작동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4) FAO/WHO, 1999. The application of risk communication to food standards and safety matters (Roma; FAO/WHO) 3

(5) 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食の安全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現状と課題》(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東京) 1

(6) 吉川肇子, 2004 <위 논문> 92

(7) 이병오, 2004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전략> 《농업경영. 정책연구》 31-4

(8) 최지현 외, 2004 《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9) 엄영숙, 2005 <식품안전사고와 위험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수입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 자료》 11~20

(10) 吉川肇子, 2004 <앞 논문> 106

(11) 中島貴子, 2004 <食品安全をめぐるディ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食品安全委員会への提言—> 《社會技術研究論文集》 2, 321~330

(12) 中嶋康博, 2004 《食の安全と安心の経済學》(이병오·신혜식·위태석 譯, 2005 《식품안전성의 경제학》) 124

나카지마(中島)는 2003년 이후,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중인 위험정보교환 활동은 소비자·행정·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 커뮤니케이션(discommunication)에 착목하여 위험정보교환이 행정의 신뢰확보보다 소비자 계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함과 더불어 오랫동안 행정에 대한 불신(不信)이 잠재적인 디스 커뮤니케이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카지마(中嶋)는 식품안전행정에서 대책이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심도에 결부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험정보교환이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안전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을 배려하여 추진해야 하나 국민들의 식품의 안전도나 위험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식품안전행정에 위험분석을 접목한 수법이 미도입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인 위험정보교환도 일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현시점의 여러가지 제도 및 정책 가운데 위험정보교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하여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즉, 위험분석 수법을 수반한 식품안전행정이 도입의 중점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인 위험정보교환은 본격적인 연구에 대한 착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식품의 위험정보교환 그 자체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또한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활동을 받아 지자체에서도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양국의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정책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 아직 미비한 부분인 지자체의 식품안전성 위험정보교환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 Ⅲ.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한일의 대응

#### 1. 한국의 현황

전술했듯이 한국에는 식품안전행정 그 자체가 재편과정이기 때문에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한국의 식품안전행정의 특징, 한국 국민들의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식품안전행정에 대해 검토한다. 류창호<sup>(13)</sup>나 황수철<sup>(14)</sup>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경우, 관리대상인 식품, 공급단계별로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나, 식품에 관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효율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표 1> 과 같이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

<표 1> 품목별, 단계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

구분	1차생산 (품)		2차생산 (품)		유통 (보관·운반 등)	소비 (식당, 백과점 등 최종판매단계)
	재배·사육 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농산식품	농림부		식약청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식약청			
축산식품	농림부					식약청
물(생수)	환경부					식약청
기타	학교급식 (교육부), 주류 (국세청), 천일염 (산업자원부) 등 부서별 특성에 의해 관리					

\* 출처 : 황수철 <앞 논문> 118

(13) 류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14) 황수철, 2006 <푸드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전략》 (정영일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編, 2006 《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전략》) (박영물출판사, 서울) 116~117

유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러한 제도 자체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과 달리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 역시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법률제정<sup>(15)</sup>에 관해서는 각 위원으로부터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위원회의 사무국설치 등 주도권을 놓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는 등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안 중에 보건복지부에 주도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해 농림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앞서 서술한 행정기관간의 협력 미흡에 있다고 생각된다.

〈표 2〉 식품안전 기본법안의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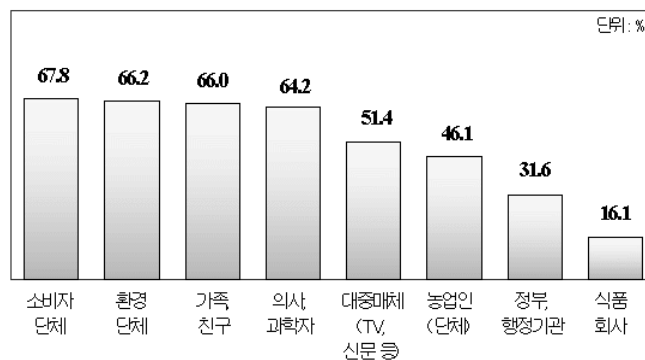
구분	정부법안	김선미 의원대표 발의안	고경화 의원대표 발의안	강기갑 의원대표 발의안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산하	대통령 산하	대통령 산하
	구성	8가지 관계부서 장관, 민관위원	관계부서 장관 및 민간위원	민간위원 (관계장관은 제외)
	감사	-	보건복지부 장관	-
	사무국	사무기구 설치 (위원회 설치)	사무국 설치 (보건복지부에 설치)	-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국무총리)	3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수립 (식품안전위원회)	3년마다 수립 (식품안전위원회)

\*출처 : 《농민신문》 2005 년 4월 11일

다음으로 식품안전성에 관한 국민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정숙<sup>(16)</sup>의 조사를 들 수 있다. 이하에는 그 가운데 위험정보교환과 관련된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처에 대한 신뢰도, 정부의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활동평가, 위험정보교환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정보제공별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으로 신뢰하는 것은 소비자단체 (67.8%) 및 환경단체 (66.2%) 이다. 이에 비하여 행정기관은 31.6%, 식품회사도 16.1%로 비교적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가 소비자에게 있어 다른 주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그림 1〉 정보제공단체별 신뢰도



\*출처 : 최정숙, 2004 《앞 책》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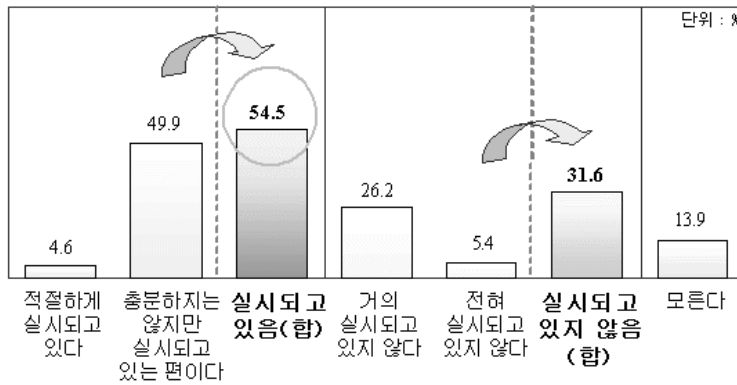
(15) 이에 대해서는 김용상 (2005)에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김용상, 2005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구축방안〉 《축산식품의 유통개척을 위한 현황과전망》 (한국축산식품학회 제35회 학술발표대회자료)을 참조.

(16) 최정숙, 2004 《농산식품의 안전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수원). 본 조사는 2004년 5월에 한국에 사는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이다. 또한 생산자에 관해서는 최정숙, 2006 《생산자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수원)이 있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정부나 식품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림 2〉는 정부의 위험정보교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 라는 평가는 4.6%에 불과하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시되고 있는 편이다” 라는 대답은 49.9%로 두 가지를 “실시되고 있다” 라고 합계한 경우는 54.5%가 되어, 과반수가 “실시되고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시되고 있지 않다” 는 대답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를 합계한 경우 31.6%이다. 정책실시에 대해서는 “실시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충분하다” 라는 평가는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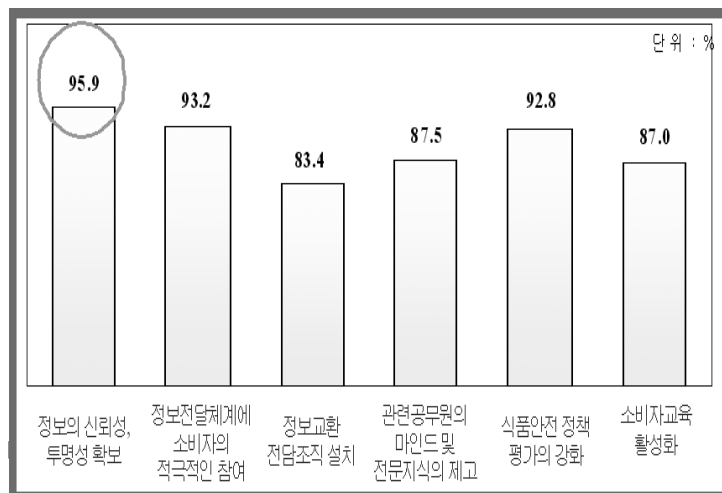
〈그림 2〉 정부의 위험정보교환 활동에 대한 평가



\* 출처 : 〈그림 1〉 과 같음.

〈그림 3〉은 위험정보교환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중시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이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험정보교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과 더불어

〈그림 3〉 위험정보교환 활성화 방안



\* 출처 : 〈그림 1〉 과 같음.

소비자 등 식품안전정보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예를 들면, 의견 교환회나 전문가의 강의 등)의 적극적 개최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식품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식품마다 담당부서가 다르고, 문제발생시 원인규명의 어려움, 부서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대응도 있으나, 부서간의 이해조정 난항으로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활동은 “실시되고 있다”는 평가가 50% 이상이 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이라는 조건하에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제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일본의 경험과 대응

식품안전성에 관한 위험정보교환에 대해 일본의 경험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 2001년의 광우병 발생 전후의 동향을 살펴보고, 근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때 지자체가 위험정보교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1) 2003년 이전의 식품안전행정의 문제점

2003년 이전 식품안전행정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같이 식품안전행정에서 위험분석 수법이 도입되지 않았고, “식품안전기본법” 처럼 식품안전성에 대응한 일반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체계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01년의 광우병 발생에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전체가 혼란 상태에 빠져 쇠고기 소비감소를 비롯하여 생산농가나 외식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쇠고기 매입제도를 악용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이후 일본정부 내에 “광우병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 위원회<sup>(17)</sup>”가 조직되어 종전의 식품안전행정의 문제점, 향후 식품안전행정의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광우병 발생이후인 2004년에는 “광우병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에 의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광우병 발생이전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으로 이하 7가지를 지적하고 있다<sup>(18)</sup>.

1. 위기의식 결여와 위기관리 체제의 누락
2. 생산자 우선·소비자보호 경시의 행정체계
3. 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한 행정기구
4.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부족
5.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대응 부족
6. 정보공개 불철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7.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이러한 점은 정책결정 과정 불투명성, 행정기관간의 협력부족, 정보공개 문제, 법제도 문제 등 서술한 한국의 사례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 광우병 발생이전 일본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로 지적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일본은 식품안전성에 관한 위험정보

(17) 이 위원회는 산업계, 농민, 정부관계자를 제외한, 제3자 인 수의학자 3명, 언론 관계자 3명, 소비자단체 위원 2명, 기타 2명인 전체 10명으로 구성됨.

(18) BSE問題に關する調査検討委員會, 2004《BSE問題に關する調査検討委員會報告》(BSE問題に關する調査検討委員會, 東京)



로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가 있다. 또한 광역적인 조직으로는 규슈·야마구치 지방에는 규슈·야마구치 지역 식품안전 안심 행정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가.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군마현(群馬縣)·기후현(岐阜縣)·사가현(佐賀縣)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으로,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과 더불어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 시즈오카시(静岡市) 등 일부 시(市)로 구성된다<sup>(21)</sup>. 2002년의 네트워크 발족이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 지자체간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네트워크가 실시되어 왔던 내용을 보면, <표3> 과 같다. 처음에는 지자체의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지자체간의 정보교환에 더하여 소비자에도 정보제공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21가지 지자체에 의해 “생활의 도움이 되는 식품표시 핸드북” 을 발행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표 3> 전국 식품안전 자치네트워크에서 의견교환 내용

제1회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의 조직의 특색과 현재의 과제</li> <li>- 사업의 실시 상황</li> <li>- 식품안전 행정에 관한 행동계획 등의 수립 상황</li> </ul>
제2회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 행정 현상 등에 관한 정보교환</li> <li>- 과제 등에 관한 의견교환</li> <li>- 2004년도 예산에 관한 정보교환</li> <li>-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li> </ul>
제3회 회의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대한 의견교환</li> <li>식품의 안전에 관한 행정체계, 식생활교육, 위험정보교환, 식품표시, 잔류농약, 식품검사, 홈페이지의 운용, 식품에 관한 인증 및 등록사업</li> </ul>
제4회 회의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대한 의견교환(새롭게 추가된 것만 올림)</li> <li>농약검사(Positive list 제 이행에 따른 대응), 소비자대상 사업, 식품안전 GAP 에 대한 대응, 환경보전형 농업에 관한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원 대책 생산이력제에 대한 사업, 식품위생감시원의 능력향상, 위험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li> </ul>

\* 출처 :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홈페이지.

나. 규슈·야마구치 지역 식(食)의 안전 안심 행정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2005년 6월 3일에 개최된 제125회 규슈 지방지사회의에서 “식(食)의 안전 안심행정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회 보고서” 가 승인됨으로 동년 8월에 개최된 “규슈·야마구치 식(食)의 안전 안심 협력회의” 에 의해 위기 발생 시에 각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신속하고 정확히 실행하기 위하여 24시간 체제의 연락망으로 전국 최초로 정비된 것이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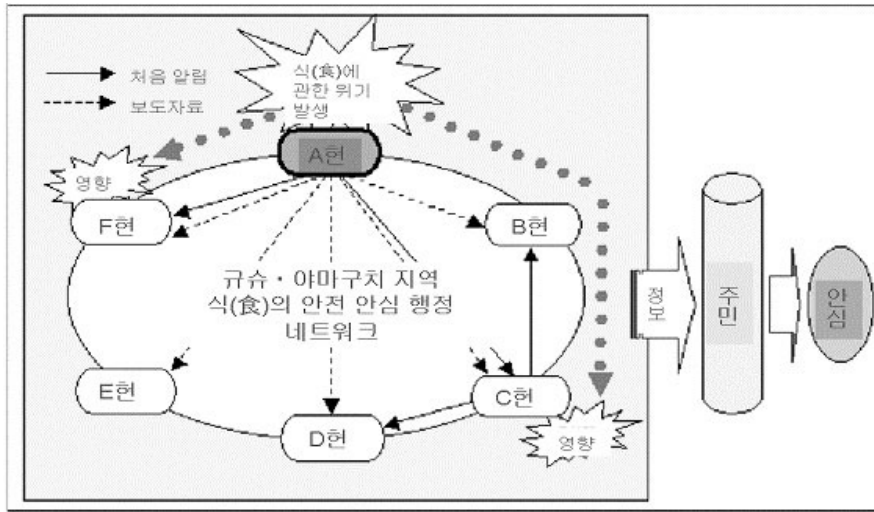
이것은 각 현(縣)에 종합창구를 설치하여 정보전달에 대한 책임자를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정보전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sup>(23)</sup>, 기타 문제발생시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매뉴얼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21) 全国食品安全自治 네트워크 홈페이지

(22) 九州農政局 홈페이지 (http://www.kyushu.maff.go.jp/).

(23) 九州・山口地域食の安全安心行政ネットワーク, 2005《九州地方知事會「食の安全安心行政に係る連携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會」研究報告書の概要》(九州・山口地域食の安全安心行政ネットワーク)

〈그림 5〉 규슈·야마구치 지역 식(食)의 안전 안심 행정 네트워크 개념도



\*출처 : 규슈·야마구치 지역 식(食)의 안전 안심 행정 네트워크

규슈·야마구치 지역 식(食)의 안전 안심 협력 회의를 설치하고,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

다. 기타 대응

기타 각 지자체에는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례 수립, 행동계획·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성에 관한 의견 교환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소비자 홍보를 목적으로 식품안전성에 관한 소책자 작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자체(야마구치현(山口縣) 외)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책자에는 식품안전성 정보(식품표시, 첨가물 등)와 더불어 지역 내 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소책자에는 식품안전성 정보 보급과 함께 지역특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식생활교육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대응이 활성화 된 배경으로는 각 지역의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 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점에 있었다. 또한 앞서 서술했듯이 식품의 유통이 단일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의 유입과 타 지역으로 유통시킴으로 인해 상대 지역에 안전성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 지자체 대응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와 같이 한일양국에서 식품안전행정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 일본이 도입 중인 위험분석 수법을 식품안전행정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본법의 부재, 안전성관리가 부서마다 관리됨에 의한 부서간 정보교환 문제,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함에 있어 행정기관간의 신뢰관계 구축 및 정보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에는 2001년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중전의 식품안전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식품안전행정이

대폭 재편되었다. 그 과정에 위험분석 수법이 도입되고, 그 구성요소인 위험정보교환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 단계에서 대응하게 되었다. 본 문에는 일본에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지자체단계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규슈 야마구치 지방은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대응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대응은 전술한 정부단계의 대응을 따르면서 자기 지역 특색을 활용한 정책 강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자체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은 앞으로 지자체간에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함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각 지자체간의 안전성에 대한 대응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차별화라는 개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행정 재편이 진행 중인 한국은 정부단계에서의 식(食)위험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본과 같은 지자체 단계에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육성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타 지역과의 협력을 도모, 지자체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